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0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발 의 자: 차인영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차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어린이 통학로에서 공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세부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어린이 통학로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에 교통안전 조치, 학교 협의, 안내표지 설치, 위해요소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☐ 개정 배경 및 취지

-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526건으로,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매년 400~500건 수준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어린이는 뇌의 인지 및 판단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하고, 돌발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, 도로 상황을 인지하거나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 또한 미흡함.
-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구조물·장비 등이 밀집한 공사현장에서는 낙하물이나 대형 차량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특히 높으며, 레미콘·포클레인 등 대형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작은 어린이가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사현장 인근 어린이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한 실정임.
-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도록 하여,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0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명시함.
 - 세부적으로는 ▲공사 시 교통안전 대책 ▲공사장 출입구 위치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▲공사안내표지 설치 ▲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▲도로부속물 설치·관리 ▲공사 중 위해요소 관리 ▲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예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,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안전확보 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이를 통해 교통안전 대책 마련, 신호수 배치,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등 예방

중심의 안전대책을 체계화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으로
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차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2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0. .

발 의 자: 차인영·최인순·임헌호
김지연·정선희 의원 (5인)

1. 제안이유

어린이 통학로에서 공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, 세부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어린이 통학로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에 교통안전 조치, 학교 협의, 안내표지 설치, 위해요소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함.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0조의2제2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1.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
2.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
3. 공사안내표지·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
4.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
5.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6.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
7.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기존 제10조의2의 제2항은 제10조의2의 제3항으로 변경한다.

제12조의 ‘제7조’를 ‘제8조’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 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<u>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</u> 2. <u>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</u> 3. <u>공사안내표지 ·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</u> 4. <u>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</u> 5. <u>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 부속물의 설치 · 관리에 관한 사항</u> 6. <u>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</u> 7. <u>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</u> 8. <u>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</u>

	<u>고 인정하는 사항</u>
제10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.	제10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2조(지원)구청장은 제7조에 따 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 의 안전을 위하여 등·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2조(지원)----- 제8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